

주주간 계약서

20__ . __ . __.

운영사

이해관계인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년 __월 __일 회사주소에 주소를 둔 회사명(이하 “투자기업”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투자기업”의 경영 및 주주의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한다.(이하 “본 계약(서)”)

1. 주주1 : 운영사 (이하 “주주1”)

주소 : _____

대표이사 : _____

2. 주주2 : 성 명: _____ (이하 “주주2”)

생년월일: _____

주소 : _____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주1”이 ____년 __월 __일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따른 부속 계약서로서 “주주1”과 “주주2”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중소기업청이 제정한 『TIPS 프로그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총괄 운영지침』의 용어 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TIPS 프로그램』을 위한 주주들의 노력)

- ①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이하 “TIPS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창업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TIPS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창업팀으로 선정된 후 “TIPS 프로그램”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TIPS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창업팀으로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주주1”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1”은 “투자기업”이 “TIPS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창업팀으로 선정된 경우, “투자기업”이 “TIPS 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 발행 주식을 처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주2”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2. “투자기업”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투자기업”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투자기업”이 “TIPS 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주주1”이 〇〇년 〇월 〇일 “투자기업”, “주주2”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의해 부여 받은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유지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라 인수한 주식의 [30] %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가. “투자기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임원, 주요주주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나. 제1금융권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
다. 채권추심업체
라. 기타 주주로서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외의 권리를 요구하며 “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제5조 (“주주2”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2”는 〇〇년 〇월 〇일 “투자기업”, “주주1”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 발행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약벌의 청구)

- ① 어느 당사자 일방이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해당 주식 처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위약벌 지급의무는 위약벌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위반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 ③ 본조에 의한 위약벌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1”과 “주주2”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체결일 : 20〇〇. 〇. 〇.

주주1 : 윤영사

주소 : _____

대표이사 : _____

주주2 :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 _____